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트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유 :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18. 8. 24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(연, %)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7. 14.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4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일로 기재	2018. 3. 31. 기준	<u>2018. 7. 31. 기준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[1]. 투자전략 5. 투자실적 추이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7. 14.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 험관리 2. 투자위험 등급 분류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표준편차 : 4.86%	<u>표준편차 : 4.98%</u>

III. 집합투자기구 기타 정보 1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조의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액공제	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(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300만원 이내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조의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	---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일로 기재	2018. 3. 31. 기준	<u>2018. 7. 31.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표준편차 : 4.86%	<u>표준편차 : 4.98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7. 14.</u>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	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: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~② (생략)	2)수익자에 대한 과세 :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( <u>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300만원 이내</u> 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
나. 과세		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7. 14.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7. 14.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7. 14.</u>

